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31일, 최보윤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1.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보윤의원)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제32조의3제2항, 제87조제2호 및 제2의2호에서는 각각 ①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② 반환, ③ 위법한 양도 또는 대여 및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 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2025년 말부터 발급 예정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회수의 법적 근거와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와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2025년 12월 중으로 발급을 개시하여, 약 3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2026년 3월부터는 본 발급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2025년 내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과 유사한 사례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는 2024년 12월부터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2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앞서 살펴본 「주민등록법」 및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도입에 따른 개정으로 부칙 시행일을 각각 공포 후 1년과 공포 후 약 9개월로 정한바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